

소방안전강사용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길라잡이

Guide for Fire Safety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06

CHAPTER 01
장애 이해



- 01 장애의 정의
- 02 장애의 유형
- 03 장애 유형별 특성
- 04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 05 장애 차별 용어

22

CHAPTER 02
소통하기



- 01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02 시각장애인
- 03 청각·언어 장애인
- 04 지적장애인

28

CHAPTER 03
장애와 재난



- 01 장애와 재난
- 02 장애 유형별 재난취약 특성
- 03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피 특성
- 04 재난취약 특성별 재난대응
- 05 장애인 사고 사례

40

CHAPTER 04
**장애인
재난 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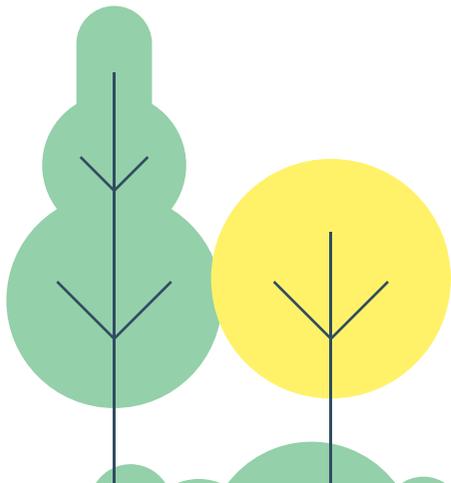
- 01 장애인 재난 안전교육 과정
- 02 장애인 재난 대응교육 방안

52

CHAPTER 05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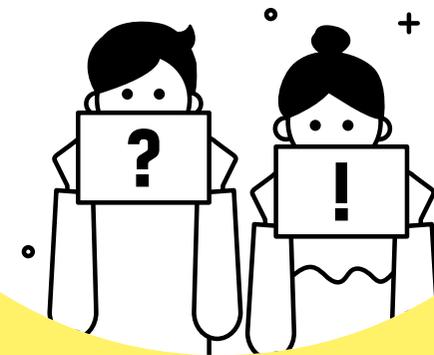
- 01 재난 현장 등에서의 의사소통 방안
- 02 상황별 장애인 지원
- 03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 04 장애인 재난 지원 시스템 구성



CHAPTER

1

장애 이해



- 01 장애의 정의
- 02 장애의 유형
- 03 장애 유형별 특성
- 04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 05 장애 차별 용어

01 장애의 정의



세계보건기구 (WHO)

장애인은 선천적·후천적으로 신체 및 정신 능력에 결함이 발생,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 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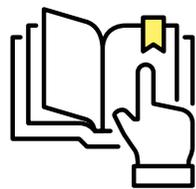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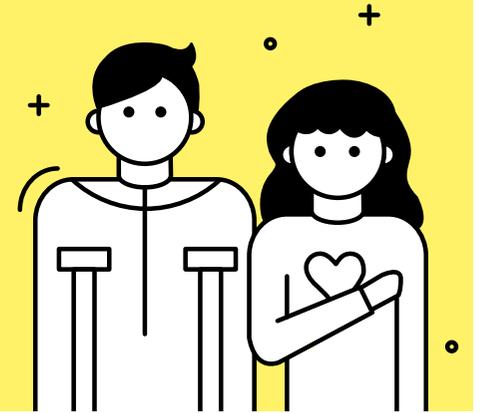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다.



02 장애의 유형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시행령 정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안면장애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신장 이식자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폐, 기관지) 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뇌전증장애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배변 혹은 배뇨 기능 이상	
	지적장애	지능지수 70 이하 + 적응행동 이상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 장애	

03 장애 유형별 특성



신체장애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절단, 지체기능장애, 관절(운동)장애, 변형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절단은 상하지 절단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 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 등으로 팔 또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 약화, 마비 등을 말합니다.
- 변형은 신체 모양이 좌우대칭이 맞지 않거나 왜소증과 같이 전반적으로 발육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신체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보조 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일상생활은 물론 이동, 직장생활도 스스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의 종류로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이 있습니다.

- 뇌성마비는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뇌가 손상을 입고 그 기능이 저하되어 마비와 기타 여러 장애가 동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 뇌졸중의 경우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 질환 등으로 뇌의 기능이 마비되어 발생하는 뇌혈관장애로 중풍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장애, 감각장애, 인지 및 지각장애, 언어장애, 대소변장애 등과 함께 사회 심리적 문제를 갖습니다. 편마비가 주된 특징입니다.
- 외상성 뇌손상은 외상에 의한 뇌손상으로 신체적, 신경행동학적 장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등으로 발생하며 손상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 및 식물인간 상태로 구분됩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법적 기준

「장애인복지법」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로 구분합니다.

구분	내용
지체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팔, 한쪽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손가락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쪽 다리를 리스프랑(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	<p>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의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p>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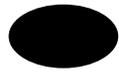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시각장애에 관해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가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다는 점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해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맹'과 특정의 광학 기구나 학습 매체를 통하여 학습하는 '저시력' 학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시력, 시야, 색깔, 안구운동 등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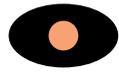
손상이 심하여 시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잔존 시각 능력을 이용하여 보조 공학 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잔존 시력을 이용하여 생활을 해나가는 시각장애인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맹

활용 가능한 잔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빛의 지각도 어렵다.



주변시야결손(터널비전)

주변시야가 손상되어 중심 부분만 보인다.



중심시야결손

중심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다.



부분시야결손

망막 출혈 또는 삼출물로 인해 얼룩이 생겨 시야의 여러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의 법적 기준

「장애인복지법」의 기준

시각장애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 2015.11.14.)입니다. 시각장애는 시력 또는 시야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원거리 시력표로 측정합니다.

시각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 등급	장애 정도
1급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는 사람
4급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는 사람
5급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시각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다는 점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해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맹'과 특정의 광학기구나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는 '저 시력'학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가 말의 판별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청력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농(feaf)이라고 하며,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듣고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상태를 난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기기(보청기)의 사용이나 인공 와우 수술을 통해 소리를 듣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해서, 인공 와우 수술을 했다고 해서 비장애인이 듣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소리, 강도, 주파수 영역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의 법적 기준

「장애인 복지법」의 기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자, 또는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자, 또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자,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입니다.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구음장애, 음성장애, 구개열에 따른 언어장애, 뇌성마비에 따른 언어장애, 청각장애, 흡음(더듬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 언어발달지체는 언어 능력의 발달이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정상적인 발달 순서에 따라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 실어증은 보통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연상하게 됩니다.

실어증의 종류

구분	내용
완전실어증	언어 표현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조차도 이해하지 못함
운동실어증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이해하지만 의사 표현에는 어려움이 있음
감각실어증	운동실어증과 반대로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 구음장애는 조음장애라고도 하며 운동마비성 발음장애를 말합니다. 단지 단어나 소리를 적절한 강세나 크기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언어장애가 있다고 해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무능력한 것은 아니므로 언어장애인과 대화할 때 하대를 한다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면장애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됩니다. 함몰이나 비후는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합니다.

안면부는 얼굴뿐만이 아닌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안면장애의 원인에는 화상, 사고, 화학약품, 질환, 산업재해 등이 있습니다.

정신장애

정신적·정서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질환으로,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정신증	<p>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및 감각의 왜곡 동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증 : 환각, 망상, 환영, 환청 등 경험, 대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긴장 • 조울증 : 양극성 장애로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
신경증	<p>사고는 정상이나,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장애 : 심리적인 갈등이나 부담으로 몸이 마비되거나 운동-감각 기능에 이상이 생김 • 신체화장애 : 내과적 증상 없이 다양한 신체 증상 호소 • 강박장애 :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하게 되는 상태

정신장애는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일반 직장생활을 할 만큼 약물로 인한 조절이 가능하며, 업무 능력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선부른 선입견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하는 발달장애 상태로 지적, 인지적 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있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지능검사에서 70 이하의 소견을 보이지만, 지능지수뿐 아니라 자기 관리나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지적장애로 봅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라고 해서 학습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므로 무시하거나 성인 지적장애인을 어린이 다루듯이 대하면 안 됩니다.

지적장애인의 법적 기준

「장애인복지법」의 기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안정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장애 등급	장애 정도
1급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성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 장애

자폐증(autism)은 자기 자신에 비정상적으로 몰입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폐증의 일반적인 증상

구분	내용
사회적 고립	자폐증으로 진단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증상입니다.
정신지체	약 76~89%의 자폐 아동들은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정신지체를 동반합니다.
언어적 결함	자폐 아동의 절반 이상이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말을 더듬거리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방향어를 보입니다.
행동장애	어떠한 움직임을 아무런 목적 없이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폐성장장애인의 법적 기준

「장애인복지법」의 기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 등급	장애 정도
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부 장애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이라고도 불리는 신장장애는 신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혈중 요소질소가 상승하고, 혈청 전해질의 이상을 초래한 상태를 말합니다.

신장장애인의 경우 신장의 기능 부진으로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심장장애

심장 기능의 장애가 지속되어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장애는 흔히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막염 등의 심장질환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나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 즉,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을 총칭합니다. 원인이 되는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없이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기류의 속도가 감소하는 질환군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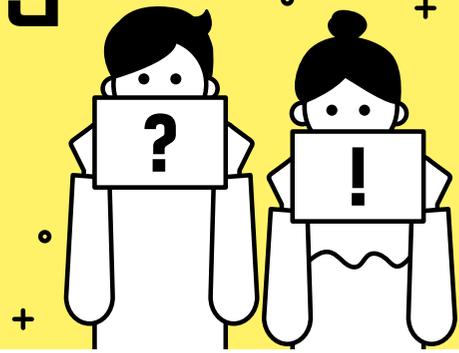
간장애

간 기능의 손상이나 이상, 그에 따른 합병증(복수, 자발성 세균성복막염, 간성뇌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루·요루 장애

장루·요루장애는 대장암이나 방광암 등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인공 배뇨관에 의존해 배변을 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루·요루 장애는 대변이나 소변 조절 능력이 없어 수시로 배설하므로 신체에 부착하는 보조 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냄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당사자가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04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떠올리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고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그렇지 않아요. 물으신다면 대답은 No!!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도 있지만, 약시(저시력 양안 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 색맹 등으로 인해 한쪽 시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과 객관적 사실

편견	객관적 사실
시각장애인은 오감 이외의 여섯 번째 감각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하나의 감각을 더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각장애인이 벽이나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고 멈추는 것은 소위 '안면 시각'과 같은 감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청각을 통해 공기 흐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맹 시각장애인은 세상이 온통 캄캄한 것으로만 경험하고 있다.	전맹 시각장애인은 세상을 온통 캄캄한 상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틀 무렵의 어슴푸레함, 색조 있는 빛의 플래시 등과 같이 시각 경험의 양과 시각장애 발생 시기 및 원인에 따라 달리 느끼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잠잘 때 꿈을 꾸지 않는다.	시각장애인도 잠잘 때 꿈을 꾸다. 꿈속에서는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소리나 몸의 접촉감, 냄새나 맛 등의 감각을 경험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을 대변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말을 걸어야 한다.

편견	객관적 사실
시각장애인은 목소리를 들으면 쉽게 사람을 알아차린다.	일부 시각장애인은 청각 기억이 뛰어나지만, 대부분 목소리만 듣고 사람을 식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 누굴까?"와 같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름을 맞히라고 시각장애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히며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각장애인은 음악성이 평균 이상이다.	안드레아 보첼리, 이상재, 전재덕 등과 같이 국내외에 유명한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정안인들보다 음악성이 더 높다는 실증 근거는 없다.
시각장애인들과 대화할 때에는 "보아라, 바라보세요" 등과 같이 시각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각장애인들도 정안인들과 같이 시각적인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므로 그런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
시각장애인에게 말할 때에는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목소리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시각장애인은 직업을 갖지 못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취업하기는 비장애인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의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

출처 AFB(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 www.afb.org)

청각장애인은 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청각장애인을 떠올리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듣는 데 제약이 있지만 청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전혀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저시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청각장애인도 난청(청력)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청력을 잃은 것만이 아닌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청각장애에 해당되므로 청각장애인은 무조건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공 와우 수술을 통해 청력을 보완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수화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화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소통 수단에는 수화, 구화, 필담 등이 있습니다.

관계의 기본, 바른 호칭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호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인 용어인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 장애가 없는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사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장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여러분은 장애인을 떠올렸을 때 어떤 것이 먼저 연상되십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중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수는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통계를 감안하여 일반 인구 중 지적장애인의 출현율은 적게 잡아도 1%라고 하니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는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모두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

장애인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비장애인들보다 약간의 편의 시설과 도움이 필요할 뿐,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무조건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도와주는 행동, 잘해주려고만 하는 행동은 옳지 않으며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신장애인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도 정신장애인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률도 높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는 사람을 뜻하며, 정신장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 쪽에 장애가 있는 것은 맞지만, 성격 이상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교정이 어려운 기질적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장애는 '상태의 개념'입니다. 정신분열병과 같은 순수 정신장애는 상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회복이 되지만, 사이코패스는 처음에는 교정이 상당히 어렵고 특수하게 제작된 치료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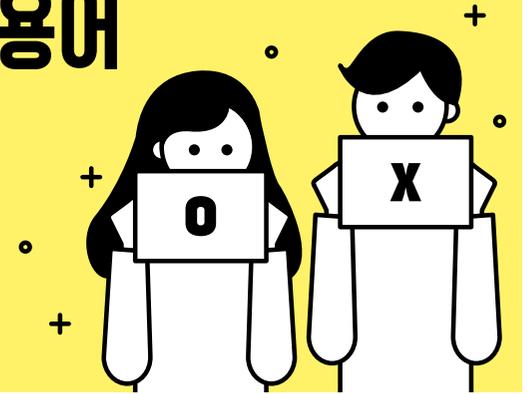
자폐는 천재?

서번트 신드롬

여러분은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현격하게 낮은 자폐인 중에서 음악 연주나 달력 계산, 암기, 암산 등에서 뛰어난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다른 능력을 가진 자폐인의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폐인은 이렇게 특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폐를 가진 장애인들은 대개 평균보다 지능이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이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학습의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05 장애 차별 용어



장애 차별 용어

장애 유형	부적절한 용어	올바른 용어
장애일반	병신, 불구자, 폐질자,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시각장애	장님, 봉사, 애꾸눈, 외눈, 사팔뜨기	시각장애인 cf)맹인
지적장애	백치, 바보, 정신박약, 등신	지적장애인 cf)정신지체(遲滯)
지체장애	절름발이, 반신불수, 외다리, 외팔이, 난쟁이, 꼬추	지체장애인
청각·언어 장애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cf)농인, 농아
	벙어리	언어장애인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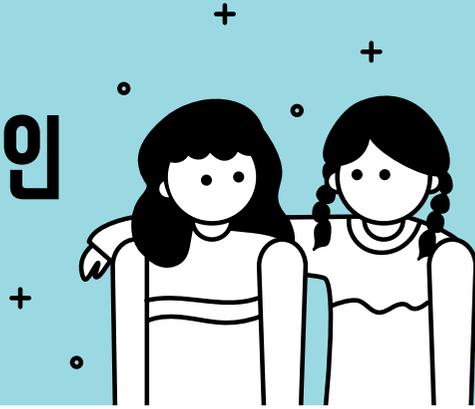
2

소통하기



- 01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02 시각장애인
- 03 청각·언어 장애인
- 04 지적장애인

01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막상 우리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지켜야 할 에티켓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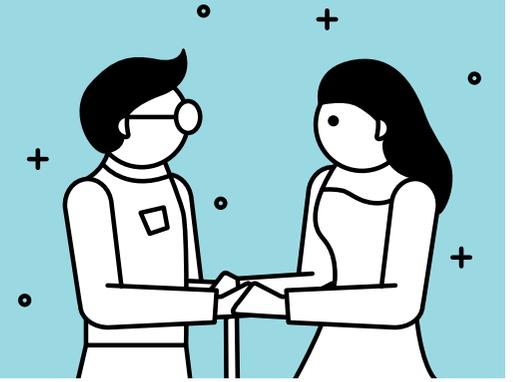
휠체어장애인 : 눈높이를 맞춰 앉아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대화를 나누기에 어려움이 없는 자세로 편안하게 앉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뇌병변장애인 :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거나 활동 보조인이 없다면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듣기 어렵다고 해서 대충 듣고 답하면 말하는 사람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을 줄 때

- 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으켜 세워 도와주려 하지만, 괜찮은지 여부를 살핀 후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 편한지 물어본 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출입문을 통과할 때에도 휠체어를 밀어주기보다는 문을 활짝 열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02 시각장애인



길을 안내하거나 함께 걸을 때

시각장애인과 인사할 때는 먼저 소속과 이름을 목소리로 알려주고, 함께 걸을 때는 팔꿈치를 내어주어 길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반대로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실례가 되는 행동입니다. 만일 혼자 걷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식당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혼잡한 경우에는 대신 배식을 받아 가져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위치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할 때

말을 시작할 때는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물건을 전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해주도록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안내견이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면 자칫 시각장애인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안내견의 주의를 끄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 세 가지

- 보행 중인 안내견을 쓰다듬는 등의 접촉
- 안내견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
- 안내견을 부르는 행위

상황에 따라 안내견을 만져보거나 함께 놀아줄 때는 사전에 꼭 시각장애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03 청각·언어 장애인



대화할 때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얼굴을 계속 마주 보며 이야기합니다.



알아두기

-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화를 한다? NO!
의사소통 방법부터 확인한다.
- 대화의 시작은 시선을 끄는 것부터 한다.
- 눈을 보며 입 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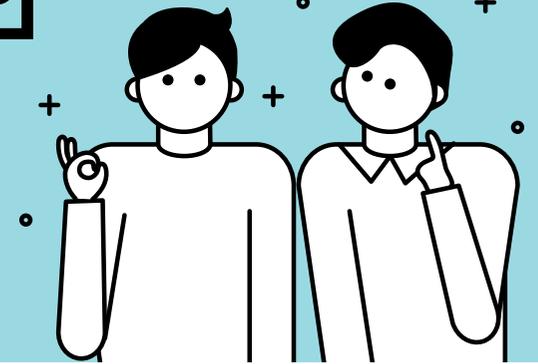
대화하기

- 표정이나 몸짓을 적극 이용한다.
- 수화 통역사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보며 직접 대화한다.
- 여러 명 대화 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공유한다.

주의를 끌 경우

-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앞쪽에서 손짓을 합니다.
- 불을 켜다 켜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를 끕니다.
- 손을 흔들어서 보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 발로 바닥을 굴러서 진동을 통해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04 지적장애인



함께 일할 때



인격을 존중합니다

인지적인 능력이 낮아도 욕구를 알고,
표현이 가능하다.

→ 의사 존중 필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작업 지시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한다.



근무 규정 근무 시간, 복장, 규칙을 반복해
설명한다.



이해도를 고려합니다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한다.

CHAPTER

3

장애와 재난



- 01 장애와 재난
- 02 장애 유형별 재난취약 특성
- 03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피 특성
- 04 재난취약 특성별 재난대응
- 05 장애인 사고 사례

01 장애와 재난



02 장애 유형별 재난 취약 특성



재난이란?

어원적 정의

재난(Disaster)의 어원은 분리·파괴·불일치를 뜻하는 Dia와 라틴어로 Star라는 Aster가 합성되어 별의 분리 또는 별의 파괴, 행성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대규모의 갑작스런 불행을 의미합니다.(이연희, 2014)

현상적 정의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야기된 규모가 큰 피해 상황을 말합니다.
(Cater, 1992)

법률적 정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인적재난, 사회재난을 포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합니다.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

-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재난 약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약자로서 장애인은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013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 조사 결과

- 주변의 도움 없이 대피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음
- 장애인의 71%는 재난에 대비한 어떤 계획도 없음
- 장애인의 50%는 재난 대피계획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보이는 대처 취약성의 특성을 장애 유형별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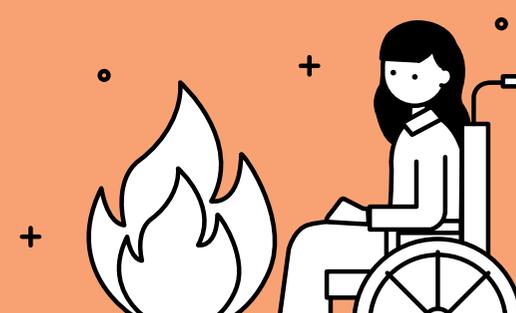
- 시각장애인은 시력 저하나 시각 상실에 따른 공간 이용의 어려움으로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비장애인에 비해 느린 보행 속도로 재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각장애인은 정보를 시각에 의존하는 특성상 재난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재난 발생 시 대응력도 취약합니다.
- 지체장애인은 수직 이동의 어려움, 이동 거리의 제한, 느린 보행 속도로 인해 재난 대처 능력이 낮습니다.
- 뇌병변장애인은 지체장애인과 유사한 보행 능력 및 속도 등의 제한으로 재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장애 유형별 재난 취약의 특성표

장애 유형	재난 취약 특성
시각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이라는 감각 기능의 상실로 인해 인지상에 많은 착오를 겪고 공간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 일상생활의 어떤 상황에서도 사건 사고에 항상 노출됨 •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 눈으로 재해 및 재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전혀 대응할 수 없음 • 재난 상황 발생 시 많은 소음 발생, 어수선한 주위 환경으로 인해 다른 감각을 활용한 이동이 어려움 • 재난 발생으로 대피 시 수평 보행 속도는 비장애인의 40~66%, 계단 보행 속도는 비장애인의 3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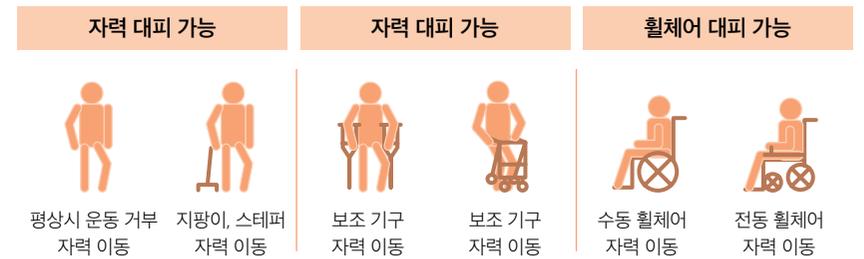
장애 유형	재난 취약 특성
청각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므로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음 •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적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음 • 비장애인의 보행 속도와 큰 차이는 없으나 재난에 대한 초기 인지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재난 대처 시간이 오래 걸림 • 화재경보가 울릴 때 대응이 취약함
지체장애인	휠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 이동이 어렵고 이동 거리의 제한 •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데 많은 공간이 필요하며 약간의 요철이나 단차에도 통행이 어려움 • 휠체어에서 다른 것에 옮겨 앉을 때의 동작이 어려움
	목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및 경사면 등의 수직 이동이 힘들고 넘어지기 쉬움 • 보행 능력이 약하고 보행 속도가 느림 • 노면이 미끄러운 재질일 경우 이동하기 어렵고 위험함
뇌병변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발생 시 경증인 경우 비장애인 대피 속도의 85% 수준이며, 중증일 경우 65% 수준이다. 휠체어 사용자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경우 이동 속도는 비장애인의 92% 수준

03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피 특성



자력 대피 가능

-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화재 시 자신의 의지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 평상시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지만,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장애인
- 수동 휠체어 또는 전동 휠체어의 사용이 자유로운 장애인



자력 대피 불가능

- 평상시 침대나 고정 의자 등에서 생활하며, 위기 상황 인식이 어려운 장애인
- 평상시 이동 편의를 위해 수동 또는 전동 휠체어를 대부분 사용하여 자력 대피 불가능,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력으로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장애인



출처 장애인을 위한 피난 매뉴얼1(보행장애인), 보건복지부, 2013

04

재난 취약 특성별 재난 대응



장애 유형의 재난 특성을 재분류해보면 이동의 어려움, 계단 이동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음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각 정보 취득의 어려움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도우미의 필요 여부가 추가로 요구된다.

이동의 어려움

주요 대상: 전신마비 장애인 및 노인, 스스로 휠체어 등을 타지 못하는 장애인 및 노인
필요 사항: 소방공무원의 우선 구조, 재난 상황 조력자를 지정 및 조력자 대피 교육, 건물 또는 인근 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수평 이동의 어려움은 주로 지체장애인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모든 이동이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화재사고 등에서 주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와상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경우 화재, 지진 등 모든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대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난 지역에 장애인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우선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계단 이동 어려움

주요 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노인, 클러치 이용 장애인 및 노인
필요 사항: 건물의 대피 공간 확보, 계단 이동 보조장치, 소방공무원의 우선 구조, 건물 또는 인근 지역 재난 발생 시 정보 전달
수직 이동의 어려움은 휠체어를 타거나, 클러치를 짚고 이동하는 등의 수평 이동은 가능하나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음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주요 대상: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구어장애가 있는 노인
필요 사항: 재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 재난 상황 전달, 진동 재난 상황 전달, 응급 수어, 조력자 의사소통 지원
음성을 통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인 등이 주요 대상이다. 뇌병변장애인 중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조력자를 지정하여 빠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미 전달의 어려움

주요 대상: 발달장애인, 인지적 뇌 손상이 있는 노인
필요 사항: 재난 상황 대피 지시, 재난 상황 인식 교육, 관련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화 시 대화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난 발생 상황에서는 ‘불났으니까 대피해’라는 지시보다는 ‘불났으니까 운동장으로 나가’와 같이 명확한 장소와 지시 사항이 포함된 언어를 사용하여 지시해야 한다.

시각 정보 취득 어려움

주요 대상: 시각장애인, 저시력 노인
필요 사항: 대피 시 조력자와 함께 대피, 건물의 대피로 안내
대피 과정에서 화재, 비상 상황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워 정해진 대피 경로를 벗어나 대피해야 할 경우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대피 시 조력자를 지정하거나, 건물의 대피 경로를 평소에 익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05 장애인 사고 사례



국내 사례

화재 : 000 씨 화재사고

**년 10월 26일 새벽 2시 10분경 서울 00동 2층 연립주택 1층에서 불이 남. 이 연립에서 거주하던 중증 지체장애인 000 씨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누워 있다가 질식사망하였고, 자신의 죽음으로 장애인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림.

000 씨가 숨지기 직전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119에 전화를 걸기 위해 입에 터치펜을 물어 펜 끝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눌러 “살려주세요”라고 신고함.

뇌병변장애 중에서도 최종증인 000 씨는 양 팔과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였음.

소방관들이 신고를 받은 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000 씨는 누워 있던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유독가스에 질식사 숨을 거뒀다 했음.

000 씨가 잠자던 방에서 현관문까지는 비장애인이라면 다섯 발짝도 채 안 되는 거리였고, 방문과 현관문 모두 문턱이 없어 전동 휠체어를 타면 2~3초면 탈출할 수 있는 거리였음. 평소 000 씨의 발 노릇을 하는 전동 휠체어가 부엌에 놓여 있었지만 활동 보조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전동 휠체어에 올라탈 수 없었고 활동 보조인은 불이 나기 3시간 전인 전날 밤 11시에 퇴근함. (한겨레신문, 프레시안 발췌)

화재 : 남매 화재사고

**년 10월 29일 오후 6시 5분경 경기 00동 아파트 14층 한 가정 창문으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올라왔음. 당시 집에는 박모(13세) 양과 뇌병변장애(1급)가 있는 남동생(11세)이 있었고, 부모는 모두 일을 나가 집에 없었음. 화재 8분 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남매는 안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방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음. 박양은 문을 향해 엎드린 채, 동생은 누나의 발밑에 가로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상태였음. 소방 당국은 이들이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던 중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음. 파주소방서 관계

자는 “누나가 동생의 다리를 끝까지 품고 있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손을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뒤 119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진 박양 남매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큰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음. 박양은 발견 직후 인근 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심폐소생술을 걸쳐 밤늦게 일산 백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남동생과 나란히 누워 9일 동안 힘겨운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유독가스로 인한 뇌손상이 커 아끼던 남동생을 남겨두고 먼저 가족 곁을 떠났음. 이어 13일 오전 9시 34분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뇌병변 1급 장애아 동생 박모(11세) 군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박군은 집 안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와 장기 손상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전해짐. 생계가 어려워 맞벌이를 해야만 했던 남매의 부모는 박군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할 경우 장애등급재판정을 받아야 하고, 등급재판정 결과 오히려 등급이 떨어져 복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 서비스 신청을 포기해야만 했음. 또한 장애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에 ‘무한돌봄 서비스’와 ‘장애아동 양육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지만, 이들 남매는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구금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한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파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아동 양육지원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짐. (세계일보, 경향신문 발췌)



국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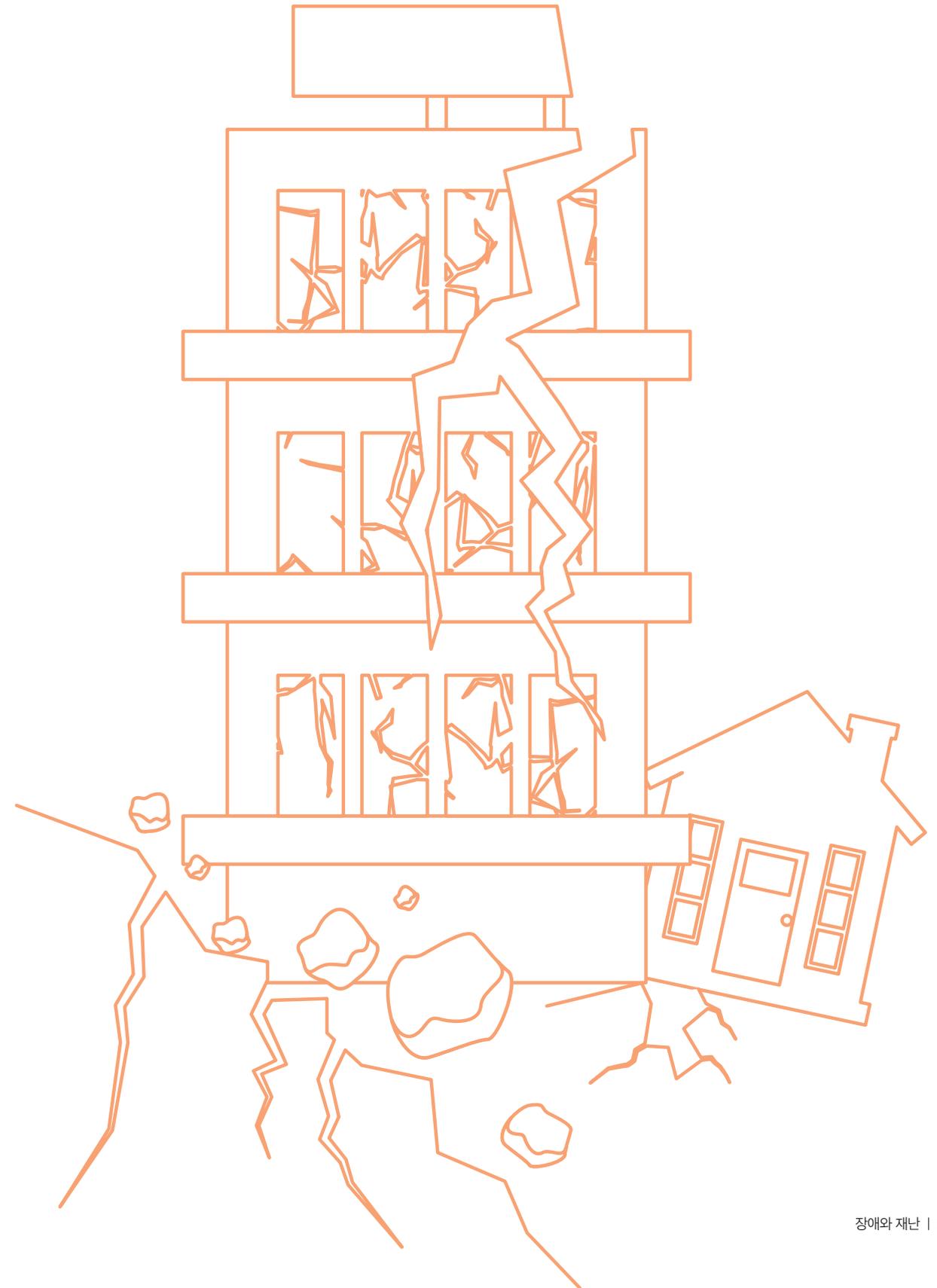
일본 : 지진 발생 시 장애인 관리

1995년 1월 17일 5시 46분 고베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 지진 이후 가설 주택에서 고립사한 사람을 포함해 6,500명 정도가 사망하고 대다수의 가옥이 붕괴·소실되는 등 일순간에 몇 개의 거리가 사라져버림. 대지진은 장애인들이 겨우 손에 넣은 집과 작업소를 붕괴시킴. 지진이 끝난 후 부서진 거리는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들에게 더욱 큰 절망을 안겨주었으며, 피난소로 정해진 학교와 시민회관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음. 피난용으로 세운 가설 주택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는 '긴급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피난·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강제로 병원과 시설, 먼 친척집으로 보내졌음.

미국 : 911 테러 이후 장애인 재난 관리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부상자가 6,291명, 사망자가 2,999명으로 사고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일부 장애인들은 피난 과정과 구조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 1976년 설립된 NTFLSH(장애인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특별 행동대)의 사무국장인 에드워너 주이렛은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재난 관리 문제를 강조함. 주이렛은 뉴욕시 소방국을 재촉하여 세계무역센터에서 실제로 피난을 경험한 2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고 후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주 전원부, 전원 그리고 디젤 비상 발전기 3종 전원 장치를 건물 밖에 설치하여 건물이 붕괴되어도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계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EVAC-Chair(계단 이용 의자) 배치
- 응급센터 확충, 배연 팬을 위한 비상 전원 확보
- 계단과 난간에 형광 테이프를 붙이거나 형광 도료를 칠함.
- 계단 입구 쌍방향 통신 시스템 설치



CHAPTER

4

장애인의 재난 안전교육



01 장애인의 재난 안전교육 과정

02 장애인의 재난 대응교육 방안

01

장애인의 재난 안전교육 과정



장애인의 재난 안전 교육 과정

효과적인 장애인 재난 대응교육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안전체험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제로 교육하는 인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조

강사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안전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방관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화재, 구조, 구급,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안전교육에 사용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제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

교육 콘텐츠 제작 시 수화를 포함하는 영상 자료, 큰 글자체·점자를 사용한 설명서나 교육 자료 제공,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나 4D 체험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학적인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사전 비상계획 수립

재난 및 응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며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필요(Special Need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장애인의 재난 시 적절한 대비를 하기 위해 ①생존 키트(Survival Kit) 준비, ②비상계획(Emergency Plan) 수립, ③정보 습득(Being Informed)을 강조한다.

화재 및 일상생활 안전 관련 사항

장애인의 신체적인 제약 사항으로 인하여 최초 재난 대응 인력이 도착하기 이전에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었다. 이것은 재난대응 시스템이 가동되기 이전 단계에서 대처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활동 보조인 및 주변에 살고 있는 가족·이웃들의 협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또한 노령화와 함께 지체장애로 인한 신체의 제약은 화재나 응급 상황 시 탈출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 안전에 관한 지식의 부족은 장애인과 재난 대응 기관에 서로 존재한다고 한다. 이들 두 그룹은 반드시 서로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화재로 인한 손실과 부상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장애인 주택이나 시설 점검 시 장애와 관련된 특정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화재 안전관리자, 소방관서, 건물 관계인 등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대피로의 개방 여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장애인과 대응 인력과 협력 가능성, 개인별 사전 대피계획의 효과성, 의사소통의 문제, 대피 후 추가적 도움의 필요성, 경보 설비에 대한 반응, 특정한 생명 유지 장비 사용 등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화재 안전대처 요령(Fire Safety Tips)

미연방소방국(USFA)은 고령자,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이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안전대처 요령(Fire Safety Tips)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은 화재 시 탈출이나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며, 이동에 제약이 있다.

장애인 화재 안전대처 요령⁰¹

구분	관련 내용
화재 이전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알아둘 것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것 비상구가 가까운 쪽에서 생활할 것 비상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연습할 것 비상계획 수립 시 화재 대응 기관을 포함할 것
화재 상황	밖으로 나가 밖에서 머무르기 문을 열기 전에 온도를 확인할 것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이동할 것 간헐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계획할 것 멈추고, 엎드리고, 구르기(SDR)
화재 예방	요리 시 주의 사항, 전기 안전, 담뱃불, 난방기 사용, 전열기구, 벽난로

⁰¹ 참조 : 1999. 미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의 미연방소방국(USFA, U.S. Fire Administration), 'Fire Risks for the Mobility Impaired'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익숙하지 않던 육체의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난로에 쉽게 화상을 입을 수도, 의복에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장애인에게는 대형 재난이나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보다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더 크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신체적인 한계를 고려한 수평 대피는 유사시 긴급한 위험을 신속하게 피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소방훈련 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동장애(Mobility Impaired)가 있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Tips

화재 이전-화재 상황-화재 예방 즉 화재 진행 단계별로 따라 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화재 안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화재경보기 사용과 사전 대피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인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택 화재에서 화재경보기는 가장 중요한 단일 화재 안전 설비라고 여겨진다.

화재 단계별 교육 내용⁰²

구분	관련 내용
화재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가까운 비상구 파악 : 이것이 비상시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 화재 안전과 디자인에 주의를 기울일 것 : 보행로, 출입구는 어떤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수용(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경보기 설치 :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화재경보기는 치명적인 연기가 발생하고 있을 때 경보를 울려 탈출하는 시간을 확보한다. •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 숙지: 휠체어 사용자라면 개인용 소형 소화기를 휠체어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착하고 사용법을 익혀둔다. • 생활 공간을 비상구 근처로 정할 것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산다면 1층을 거주지로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침대 근처에 팔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를 두며 비상시 연락 전화번호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연습 : 주택 내 모든 방으로부터 적어도 2방향 이상의 대피로를 알아둔다. 모든 방과 창문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둔다. 만일 보안을 위한 방법창이 설치되어 있다면 안쪽에서 열 수 있도록 해둔다. • 비상계획 수립 시 화재 대응 기관을 포함 : 대피계획 수립 시에 화재 대응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장애로 인한 특별한 필요 사항을 알린다. 집 안에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화재 대응 기관에 물어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아본다. 구조지역(Rescue Area)으로 계획한 장소는 화재 대응 기관이 검토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화재 대응 기관의 한계·제약을 알고, 그들에게도 자신의 한계를 알리도록 한다.
화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밖으로 나가고, 머물러라 :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 밖으로 나간다. 개인 물품을 챙기거나 화재 진압을 시도하지 말라. • 출입문 열기 전 테스트 : 손등을 사용해 문, 문손잡이, 문과 문틀 사이의 공간을 터치하여 뜨거운 느낌이 있다면 문을 닫힌 채로 두고, 2방향의 경로 중 다른 탈출로를 선택한다. 만일 차가운 느낌이 든다면 문을 천천히 열고 연기가 있다면 가능한 한 자세를 낮추고 탈출한다. • 자세를 낮게 유지하고 나가라 : 만일 가능하다면, 낮게 기어서 연기보다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입과 코를 가리고 독성이 있는 연기의 흡입을 방지한다.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한다. • 고립된 경우 취해야 할 행동 :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문을 모두 닫는다. 문틈을 메우고 환기구를 옷가지 등으로 막아 연기의 유입을 방지한다. 가능하다면 소방서에 신고하여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고, 창문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 멈추고, 옆드리고, 구르기 : 만일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자세를 낮추어 계속해서 구른다. 장애로 인하여 이 동작을 시도하지 못할 경우라면, 불꽃을 질식시키기 위한 방염 성능이 있는 담요나 깔개 등을 근처에 두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화재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 시 주의 사항 : 요리 중 가열 시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만일 자리를 떠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끄고 간다. 불꽃을 이용하여 조리할 경우엔 헐렁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 냄비, 프라이팬 등의 손잡이는 앞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돌려두어 앞질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전기 안전 : 전기담요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과열을 방지 피복이 벗겨진 전기 기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문어발식 전기 코드를 사용하면 전기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높다. • 흡연(담배) : 절대 침대에 누워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가스스토브나 산소발생기 등이 주위에 있다면 절대 금연한다. • 전열기(난방기) : 난방기 주변에 여유 공간을 확보한 가연성 물체의 주변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히터나 다른 전열기를 옷을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⁰² 참조 : 1999. 미국도안보부(Homeland Security)의 미연방소방국(USFA, U.S. Fire Administration), 'Fire Risks for the Mobility Impaired'

02

장애인의 재난 대응교육 방안



안전교육 설계 방향

“안전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교육이다. 안전의 습관화 또는 내면화는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은 행동주의 학습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⁰³

행동주의 안전교육⁰⁴

교육 종류	내용	비고
지식(이해)	사고 발생 원인 및 위험 이해	<p>지식, 교육, 기능, 태도 → 반복 → 습관화</p>
기능(숙달)	실험·실습·체험을 통한 안전 행동 학습	
태도(행동)	안전수칙 준수, 타인 배려	
반복(순환)	지식·기능·태도 반복	

⁰³ 참조 : (2016. 국민안전처,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⁰⁴ 참조 : 1999. 미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의 미연방소방국(USFA, U.S. Fire Administration), 'Fire Risks for the Mobility Impaired'

교육 기회 확대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시각장애인이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하여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재난에 대한 기본 정보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사례

- 참여자 1-A**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더 모를 거예요. 정보도 없고, 동영상도 못 보고. 책도 일반 자료와 텍스트 자료도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 참여자 4-E**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교육, 아주 밀도 있는 교육이 유년 시절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성화된 교육

장애인 시설의 화재나 구조 사례를 축적하고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와 훈련 프로그램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사례

- 참여자 4-A** 일반적인 어떤 체험, 일반적인 행동수칙 아래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체험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일반인은 하지 않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다시 재구성해야 할 것 같아요.
- 참여자 4-D** 시각장애인도 가서 경험을 해보시면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다만) 장애 특성에 맞는 재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 참여자 5-A**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늘 체험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을 위주로 체험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 체험 중심의 교육 및 훈련

재난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 체험이 아니라 참여자가 모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실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사례

참여자 4-B (지하철) 선로를 만져보는 등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승강장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한 번 만져보는 것과 아닌 것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참여자 5-B 저는 (체험관에서)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소화기나 직접 해보는 것 있잖아요... 대표로 몇 사람만 하지 말고 실제로 모두 한 번씩 만져보고, 지하철 문도 다 열어보고, 1대 1로 한 번씩 다 해보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와 실제 해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반복 훈련 및 재난 예방 교육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당황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비 장애인에 비해 많은 제약이 따르는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대처 요령을 몸소 체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사례

참여자 4-A 해마다 1-2회씩 교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몸에 밴 행동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하면서 또 한 번 와보고 싶다고 느꼈어요.

참여자 4-E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반복적으로 실질적인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고 유형별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5-D 저는 두 번째(훈련체험)인데요. 예전에 해봐서 그런지 처음과 다르게 조금 더 잘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의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난대응 수혜자에게 참여자로 인식 전환

“재난약자를 통합하는 지역기반 재난위험관리는 모든 지역 구성원의 협업으로 재난의 영향을 줄이고 특히 장애인을 통합하는 데 강조점을 둔다.”⁰⁵

독일 연방정부 부처인 Federal Minister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Inclusion)하여 재난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각각의 집단에 그들의 가족,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협회 등과 함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⁰⁶

이것은 장애인 안전체험 교육이 제공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의 설계, 참여, 평가, 개선 등 전 과정에서 장애인 그룹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의사결정 참여 유형 및 정도

참여유형	참여 정도
 Inclusion	통합(Inclusion) : 취약계층이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함
 Separation	포함(Integration) : 취약계층이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의사결정에 참여가 어려움
 Exclusion	분리(Separation) : 취약계층이 따로 구분됨
 Integration	배제(Exclusion) : 취약계층이 참여가 차단됨

출처 <http://www.inklusion-olpe.de>

의사결정 시 참여 근거

재난대응계획 수립과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각 단계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지원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조 및 제57조에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음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관계된 내용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전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취약계층 의사결정 참여의 근거

참여 근거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제9조의3 제22조의8 제34조의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전문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5 국가안전기본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6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다.

⁰⁵ 참조 Maltese International based on DiDRRN approach. Website: www.didrrn.net

⁰⁶ 참조 2013. brochure, BMZ Information Brochure 1,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All

취약계층 의사결정 참여의 근거

참여 근거	내용
장애인권리협약(UN)	장애인은 당사자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이러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고려한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029호)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029호) 57조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조 :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소방안전지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독거중증장애인 등 재난 취약자 정보

통합교육을 위한 공학적 지원

특수교육공학이란 장애를 지닌 아동의 교수·학습 장면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학 기기나 장치, 서비스, 전략, 수단 등을 말한다. 안전체험 시설이 특수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와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장애로 인한 재난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에서 제공되는 교육공학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2015. 정동영 외).

재난 시 주변인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위해 체험관에서부터 통합교육을 하여 장애인의 필요를 알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능력 배양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2016. 국민안전처,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

동일한 재난체험을 할지라도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교육 내용의 전달 방법
- 체험 프로그램 수행
- 이동 동선
-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시간
- 프로그램 참여 인원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및 통계 관리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재난 취약성, 장애인 인식개선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위기 상황에서 대처와 조력에 있어 협력이 기대된다.

안전교육 시 고려 사항

장애인 화재 등 사고 사례 현황 관리

최근 5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화재사고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화재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주거 공간에서 당하는 것보다 많으며, 주거 형태로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화재사고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2015. 최복천외).

장애인 안전사고의 반복적인 요소나 상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여 그에 근거한 안전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통계 자료는 수치적인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15. 박경서).

안전체험 시설의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편의 시설의 설치,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이동 동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의 학습, 체험, 이동을 도와주는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 효과적인 체험을 위한 추가적 시간 제공이나 소그룹으로 나누어 체험
-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충분한 통로 폭 확보 및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거나 끼지 않도록 고려
-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재난 정보 습득을 위한 웹 접근성의 제공

장애로 인한 이동 시 속도 및 프로그램 내용 이해 등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체험교육 시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고, 잔존 감각을 활용하여 개념을 익힘을 고려하여 소수의 인원으로 그룹을 지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의 교육 시 고려 사항

- 교수자와 가까운 쪽으로 앉도록 한다.
- 저시력자를 위하여 글자체가 큰 유인물 제공 및 확대경 활용, 비장애인이 시각을 활용하여 이해하는 정보(사진이나 영상의 내용 등)를 음성으로 전달해야 한다.
- 촉감, 음성 등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개념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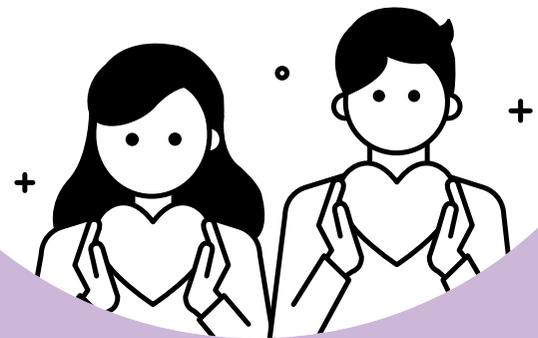
청각장애(Hearing disabilities)가 있는 사람의 교육 시 고려 사항

- 청각적 수업을 시각적인 정보 및 체험적 경험으로 보충하기
- 분명하게 말하고 학생들이 교수자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몸과 얼굴을 학생에게 향하기
- 소음을 최소화하기
- 이해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기
-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반자에게 도우미 역할을 하게 하고, 이들과 함께 협동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CHAPTE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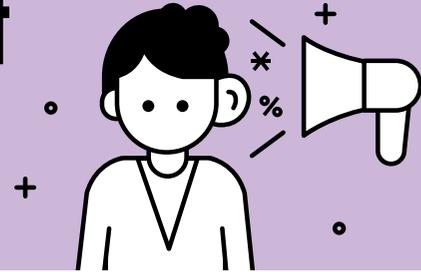
장애인의 재난 지원체계



- 01 재난 현장 등에서의 의사소통 방안
- 02 상황별 장애인 지원
- 03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 04 장애인 재난 지원 시스템 구성

01

재난 현장 등에서의 의사소통 방안



재난 현장에서 최초 대응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 일선에서 인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재난 현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상호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제약 사항을 바로 알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 현장에서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⁰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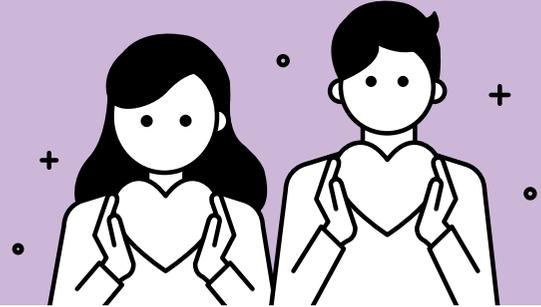
구분	내용
장애에 대한 관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중돼야 할 권리를 소유한다. 장애를 차별이 아닌 개인의 차이로 인식한다. 장애인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긴다.
응대 시 유의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대 시 장애인 당사자의 눈을 마주 보고 대화한다. 19세 이상 장애인은 후견인 없이 법률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업무 처리 시 절차를 간소화, 최소화하도록 한다.
시각 장애인과 소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흰 지팡이, 안내견의 동반 여부를 살피고 자신의 소속과 상황을 말해준다. 안내 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자신의 팔꿈치 뒤쪽을 가볍게 잡게 하고 반 걸음 앞에서 유도한다. 공간에 대한 추상적 개념의 이해가 어려우므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예. 앞으로 5m 가서 왼쪽으로 3m 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의자의 위치 안내 시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얼마 후 돌아올 것을 알리고 의자, 기동 등이 있는 안전한 장소에 있도록 배려한다. 안전교육 시 저시력자를 위해서 큰 글씨 화면을 제공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큰 글자가 사용된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스크린리더)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 검색, SNS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⁰⁷ 참조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공기관용 교재

교육 종류	내용
청각 장애인과 소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수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거나, 간단한 메모·문자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한다. 보청기나 인공 와우를 착용한 경우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하거나 메모, 문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 간단한 수어(응급수어)를 활용하고 대화 시 입 모양(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조금 천천히 말한다. 긴 문장의 사용보다는 단어 위주의 짧은 문장 사용한다. 간단한 단어 위주의 문자나 메모를 통해 소통한다.(이는 주소, 시간, 의약품명, 숫자 등 중요정보 제공 시 유용함)
지체 장애인과 소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의 어려움으로 휠체어, 클러치와 같은 보조 기구를 사용하거나 자세 교정을 위해 보조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려는 경우가 많다(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함).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눈높이에서 대화하기 위해서 자세를 조금 낮춘다. 야외에서 대화 시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고 그늘진 곳으로 이동해서 대화한다. 복도나 길을 이동 시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비켜주고 클러치 사용자는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이동 방향을 물어본 후 밀어야 한다. 휠체어는 발판이 튀어나와 있으므로 지형에 유의하여 이동하고 파인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출입문과 승강기에서는 휠체어가 완전히 통과할때까지 버튼을 눌러 문을 잡아주고, 문틈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탈때도 휠체어 사용자가 먼저 탈수 있도록 배려한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휠체어를 놓는 것은 위험하다. 멈추었을 경우 반드시 경사로와 직각이 되도록 하고, 브레이크를 잠금으로 고정하고 휠체어를 잡아준다(급경사를 올리는 경우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라가고 중간에 휴식을 취한다). 휠체어가 계단이나 턱을 오를 경우 앞바퀴를 들어 올린 후 오르며, 심한 경사를 내려올 경우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뒤로내려오는 것이 안전하다. 넘어졌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
지적 장애인과 소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능력의 제한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습이 어렵고, 낯선 환경에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좋다. 말이나 행동에 대해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놀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무조건 반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나이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길을 잃어버린 경우 신상을 물어보거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반복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이며, 일상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폐성장애와 정신분열증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사건이다(정신분열증 청소년이나 초기성인기에 출현하지만, 자폐성장애는 주로 3세 이전에 출현한다). 제한적인 관심과 반복적인 행동이 주요 증상이다. 대화 시 최대한 시선을 마주친 상태에서 대화하도록 시도하고, 쉽고 간단한 단어를 이용한다.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이상한 몸짓을 반복적으로 할 때 따라하지 않는다. 본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올바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아주 훌륭합니다'와 같은 칭찬과 '최고입니다'를 표현하는 몸짓으로 긍정적 반응을 주는 것이 좋다.

02

상황별 장애인 지원



경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정보의 전달은 최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장애인을 위한 상황별 재난경보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재난경보를 위한 정보전달 체계 및 수단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재난경보를 위한 정보 내용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에 따라 정확한 재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전에 충분히 숙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하고 명료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재난경보는 양방향성을 갖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재난 대피를 위한 조력자와 연계할 방법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을 위한 재난경보의 경우, 사전에 지정된 주변인, 조력자 등 재난 도우미에게 재난 상황 정보와 장애인의 현재 재난 상황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전에 발달장애인과 교류를 맺고 있는 주변인이 상황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과 자력 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황별 재난경보 지원체계

1. 지체장애 중심으로 수평 이동 및 수직(계단)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재난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가장 절실한 정보는 재난 도우미의 위치 및 자신의 조력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재난 도우미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구조·구급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재난 시 구조·구급을 위한 수단은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체장애 등 이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에 비하여, 의사소통이나 상황 인지가 어려운 장애를 겪는 청각, 발달, 시각 장애의 경우 구조·구급 상황에서 구조자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은 구조·구급의 효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 상황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개선 방안

- **구조대원** : 활용 가능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구조 활동에 필요한 수화 등 청각장애인과 대화 수단,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소리로 전달을 통한 의사소통 수단 방안의 강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 **구급대원** : 재난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의약품과 의료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FEMA의 경우 장애인의 생명유지 장치와 활동 보조 장치 등을 장애인 보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대로 장애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의사소통 장애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장애인 등이 사전에 문서로 준비하여 구조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승완 외, 2013).

03 유형별 대피계획 수립



장애인의 활동 및 거주 기관을 고려한 재난 대피계획 수립 필요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과 등급, 장애의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다.

- **시각장애인의 경우** :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자블록 설치, 대피로와 대피 장소에 대한 사전 안내, 방향지시 음향 시스템 등 음성정보 전달 등을 고려한다.
- **청각장애의 경우** : 대피 활동에서 이동성의 차이 등을 고려한 충분한 대피 시간 확보 방법과 대피 유도 조력자를 확보한다.
- **발달장애 및 지체 장애의 경우** : 장애인과 접점에 있는 기관별로 당해 시설 및 이용자로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재난 대피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용 및 거주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인, 집단 혹은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 등 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기관에 관련되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재난 및 대피 경로 정보 안내 방안 필요

기본적으로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접근 가능한 대피 수단과 대피 경로, 대피구역을 다양하게 설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피 경로는 장애인의 이동에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로로 설정하며, 고층 건물의 경우 수직 대피의 어려움과 엘리베이터 등의 가동 중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 대피구역 및 수평 이동 중심의 대피 경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시설(기관)별 재난 대피계획은 소방계획서상의 대피 계획을 통해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재난약자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의 점유 현황과 재난 도우미 지정 등의 사항을 담고 있지만 임시거주 및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장애인에 대한 정보도 장애 유형만을 고려하고 있어 그 구체성이 부족하다.

소방계획서 대피계획 등 기관 및 건물별 재난 대피 매뉴얼 수립 방향

현행 건축법은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조력자의 도움이 없이 현실적으로 스스로 대피 행동을 하기 어려운 한계로 작용, 특히 현행 소방계획서상의 대피계획은 개인별 행동요령, 대피구역, 대피유도계획, 재해약자의 보조 방법 및 재집결지 행동요령, 구역/층별 대피경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스스로의 대피 행동과 관련된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조력자의 지정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기관별 재난 대피계획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소방계획서상의 장애인은 이동, 시각, 청각, 언어 장애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장애 유형 및 등급 등 장애 특징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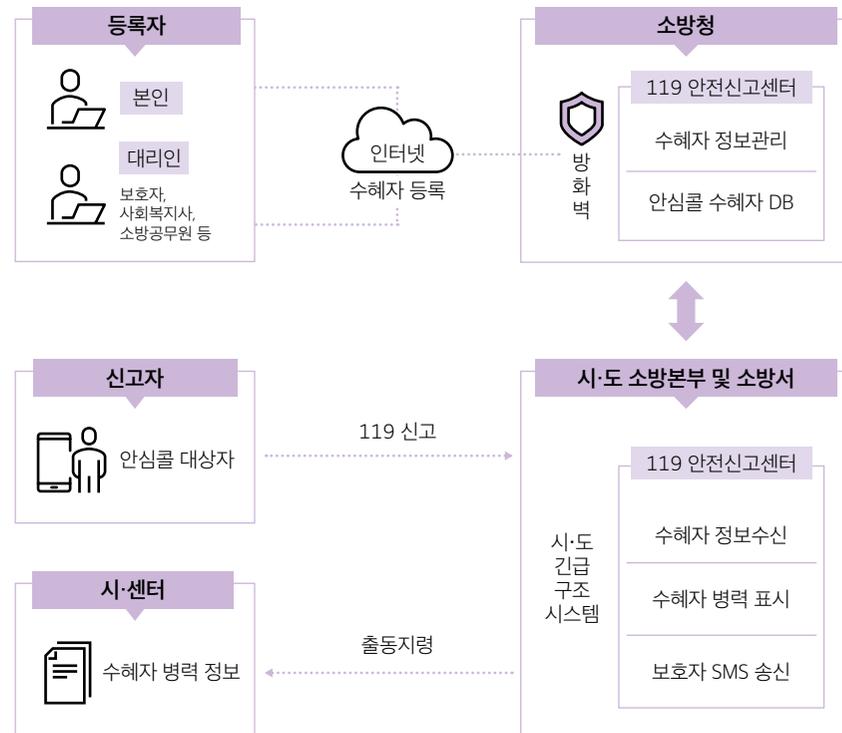
04

장애인 재난 지원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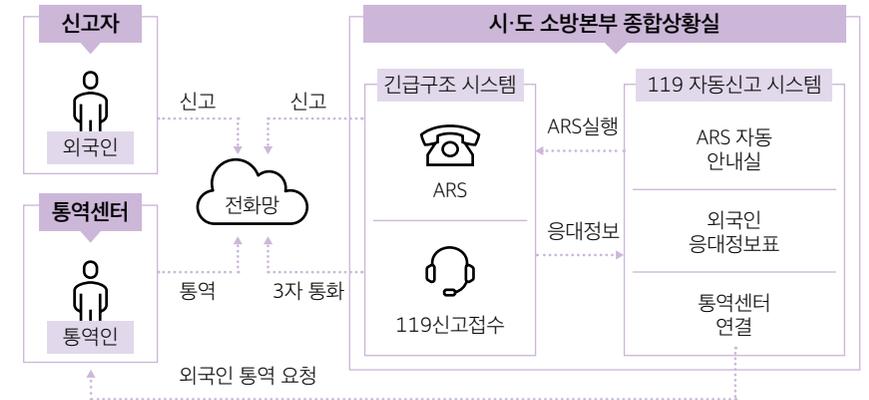
119안심콜 시스템은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확산되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 및 등급, 전화번호, 병력,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119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하면 비상 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다.

서비스 소개(시스템 구성) | 내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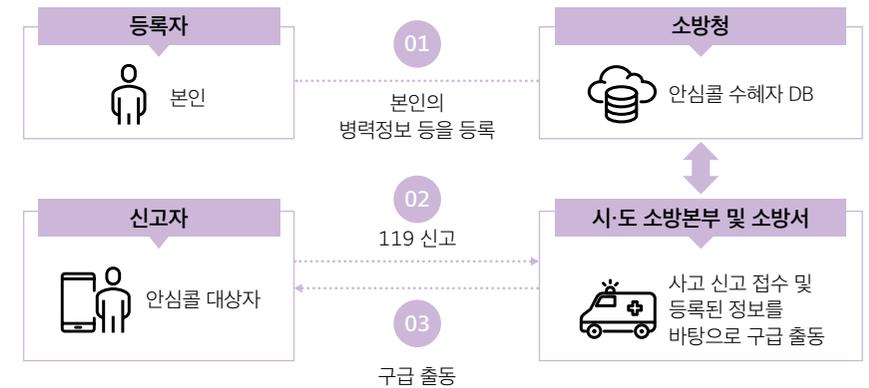


가입자가 재난 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응급 환자의 정확한 정보가 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환자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기 효과적 응급처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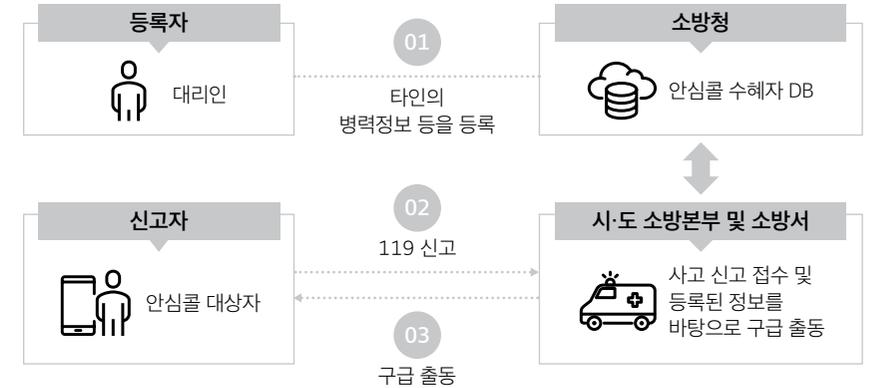
서비스 소개(시스템 구성) | 국내거주외국인



서비스 신청 방법(이용 안내) | 본인의 안심콜 등록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참고 문헌

-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및 지원체계 연구(2017.10.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인식개선 가이드(공무원용)(2014.10.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지체장애인용)(2014.2.20. 서울소방재난본부)
-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2015.10.12. 서울소방재난본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018.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시각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등 개발 연구(2015.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참고 사이트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https://www.nise.go.kr>) 장애 가이드북
- 119 안전신고센터(<https://www.119.go.kr>)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소방청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10 Jeongbu 2Cheongsa-ro, Sejong-si, 30129, Rep. of Korea T. 044-205-7666 www.nfa.go.kr
편집	김승범(서울시 소방재난본부)
